관리번호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		
내·외국인	_		내국인		
거주지국	대한	<mark>타민</mark>	거주지국코.	=	KR

_												
•	① 성 명 이현섭 ② 주민등록번호									820507-1053111		
•	③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59-87 대명빌라 나 ④ 전자우편주소									clocltree@live.co.kr		
(5) Z	3. 12.2										96-3410	
8	신고유형 22 											
2	환급금	342401	166423									
) 종합소득서	액의 계산						
			. = 1.11/0\-1.4	구	분	-1.11/6\-1=					금 액	
				근로소득 • 연금소	는 기타소는	명세(⑧)의 소늑	금액 합계	들 석습니다	ł.		15,762,979	
(14) 2	소득공제: ⑮~@합계-☺										4,160,918	
	과계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구 분		인원		금 액	
	0	이현섭	1	820507-1	053111	기본 (5) 본 기본 (2) III	인				1,500,000	
						J공제└ ^{⋓ ╙}	우 자				0	
						0 [™] ① 부 2 1® 경로			0		0	
소						- 1			0		0	
득						- 동제 🐵 부	에 <u>년</u> 녀 자				0	
공						① · ② 한부					0	
제	② 기부		0									
명	② 연금		436,590									
세			공무원・군	인 • 사립학교교적	원・별정우체	국 연금					0	
	② 주틱	0										
	③개인		0									
	_	기업창업투자 업소상공인 공								0		
				- - 경우에만3쪽의 ❸	근로소득자 소득	공제명세 한계금	<u> </u>	적습니다		2,224,328		
			2,224,02									
30 I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과세표준: ③ - 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1,602,06	
31) 人	①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6.00	
	② 산출세액: ③×⑤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696,123	
	중소기업	C										
				는 경우에만 3쪽의		자 세액감면 힙	·계금액((g))을 석습 (니다.		0	
(35) 1	예액공서 39자녀			합계금액을 적습니 ਰ/이야자, 의타이							387,982	
	세액	※ 2명 0	기는 3세 시년 기하: 1명당 15만	月(입양자, 위탁아 원, 자녀 2명 초괴	o 포함/ ト:30만원 +2	명 초과 1명당	30만원		0 명	(
	공제	출산・입	l양 세액공제: 첫	째 30만원, 둘째 5	50만원, 셋째이	상 70만원			0 명	(
						과학 술			0		0	
					공제	 퇴직연 연금자					0	
	199연금 	계와세액공세	:5쪽의 작정망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대상금	객 개인종합자 리계좌만			0		0	
세 애	 ®기부		기부금지출액 중		 법」제34조제 당제 대상금액	연금계좌년 세2항제1호에 [0		0	
ㄱ 공 제	※ 사업		경우는 제외(연말	전사대사 「소득서					0		0	
명	시업소 ! 	특자는 공제 기	(5)		·	· 당제 대상금액		0			0	
세	③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0	
		곡중세 중 이 세조합공제: 「			0							
	①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0	
	41) 성지	·I사금기누금	세액공세	10만	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0		
	적습니	다		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① 근로	소득자 세액공	제명세합	합계금액(①	⑤)을	367,982		
		사신고세액공									20,000	
44 2	결정세약	1:32-33-6	⅓-፡፡("0"보다 쯔	석은 경우에는 "0"의	으로 합니다)						308,141	

												i		() 등 중 제2 등
						구	분							금 액
④가신	<u></u> 산세액: 가산	세액명	세(46	~쉥)의 [합계금액을	을 적습!	니다							0
		Ŧ	1	분			계산기준		기	준금액		세율		가산세액
			 부	정 -	쿠 신	고	무신고납부세약수 입 금 약			() (40/ (60/	100 100)		0
	④ 무 신 고	7	'	0						(14/10	0,000		0
'	⊚ + 2 ⊥	<u>-</u>		u1 1	¬	_	무신고납부서	액		(20/	100		0
			일	반 5	쿠 신	고片	수 입 금	액		(7/10	,000		0
						I	 마소신고납부시	네액		(,48/	188)		
	④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片		액		(0,000		0
			일	반 과	소 신	-	 마소신고납부시	네앤			0 10/			0
F					 		일	<u>"</u>	(0)	107			
(♨ 납 부 지	연			 납 부	' (환		액			22/10	0,000		0
-						· .					-	00		
가산		지급	명 세	서	세 출 (불		[] 급(불명)금				-	00		0
	⁴⁹ 보고지			지	연 제		이연제출금				0.5/			0
계산 명세	불성실	근로스	- 득간	~ I I	네 출 (불			액		(0.25/100		0
Ĺ		지급		1.1	연 제		이연제출금	- 액		(0.125	5/100		0
(⊚ 공동사업	0	기 등	록 •	허 위 등	록	흥 수 입 금	액		(0.5/	100		0
	등록불성심	실 [손익분	·배비율	허위신고	. 등 총	· 수 입 금	액		(0.1/	100		0
7	⑤ 무	기		장		신	<u>·</u> 출 세	액		(0 20/	100		0
			거	래 거	부・	불	성 실 금	액		(5/1	00		
(❽ 신용카드	거부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0
	⑤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등				 가	맹イ		액				00		0
				급 거			<u> </u>	액				00		
'				<u> </u>			 실 건	수			5,00			0
					T · a									
-	O TEILO	EII JO				급	금	액				100)		0
	◎ 주택임		라마	등독		등녹기선	간 수입금액			(0 2/1,	000		0
⁽⁵⁾ 종	결정세액: ④													308,141
⑤ 기¹		납세액												0
세액	원전성:	수 및 납/ 연금소득	세조합 • 기티	징수세액. 소득명세	의 합계: ⑥ 의 소득세 :	원천(납 원천징수	세조합)징수세º :세액 ⑧ 합계를	^{ị의} 원천 적습니다	징수 또 : ŀ.	는 납세조합징=	수세액 ②합기	ᅨ와ॗॗॗॗॗॗॗॗॗॗॗॗॗॗॗॗॗ		965,220
⑤ 남·	 부할 세액 또	는 환급	급받을	세액: 🥫	5-66									-657,079
							❹ 농어촌	특별세	의 계신					
	세ㅍ즈· ⑩	 조태 T	レコテレ	이그 이고	니세애고자	II 그애의	을 적습니다.			_				0
의 세·		1 7^	10/1	H D 01/	101701		2 7 6 7 9.							20 %
		. 🙃												
	출세액: 圖×	(6)												0
	산세액													0
	계: ⑩+⑪													0
	납부세액: 원) 농어존·	특별세 합	계들 석	습니다.							0
<u> 69 남</u>	부(환급)할 /	세액: @	2-63											0
					6	나업소	득명세					🕝 원천	(납세:	조합)징수세액
<u></u>		사업	<u></u> 장		<u>@</u> 소득			0,5	^라 순 [율(%)		@A =	②원천징	- 6	이워지스이므킨
⁶⁵ 일련 호	번 <u></u>	60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6%소득 구분코드 6쪽작성 방법참고)	◎업존 코드	등 <u></u>		(%) 자기율	@필요경비 (=@x@)	③소득 금액 (=⑩- ⑫)	(3원천징- 또는 납세조합정 세액	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 100			-00000	40	94090	9 25,900,000	64 10	49.70	16,601,900	9,298,100	777,00	00 2	220-87-37738
2		_		-00001	40	94091		+	54.20	3,526,520	1,713,480	157,20		238-87-01342
3		0	00-00	-00002	40	94060		_	41.80	603,931	430,199	31,02	_	64-88-02047
								-						
	1	1			I			1	1	I		:	- 1	

### ### ### ### #####################				① 근로소득 • 연금	· 기타소득명	<u>세</u>						
(중건설 변호 (상명) (우인동국턴호 (상명) (유민동국턴호 (사명학국턴전 (사명학구전 (사명학교학 (사명학국턴전 (사명학전	@ <u>^</u>	원천징	수세액									
51 1 찍스어빌리티 572-86-01963 9,702,000 5,380,800 4,321,200 0		번호 예상호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소득세	❸ 농어촌 특별세				
응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1			9,702,000	5,380,800	4,321,200	0					
응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응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응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응 주택자금 공제 ① 주택마던저축소득공제 ② 구택마던저축소득공제 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②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② 합 계: 왕+왕+왕+왕+왕*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응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근로소득2	└──── 다 소득공제명세							
공제	 트벽수드	85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					357,200				
교육대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 통제 '							0				
고박의 소득공제 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❸ 주택마련저축	추소득공제					0				
조득공제 생 신용카드등 사용액 1,8 1,	그ㅂ١이							0				
● 합 계: ◎+◎+◎+◎+◎+○+◎ +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0				
응합 계: 응+응+응+응+응+이용 (응) (의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영) 도소득세법								1,867,128 0				
(1)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2) 주로소득자 세액감면 (3) 주로시트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제18조 외) (3) 주세트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 (4) 조세트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 (5) 조세트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 (6)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7) 합 계: (2)+(2)+(2)+(3) (8)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8) 근로소득사세액공제 (9) 보험료 (8) 보험료 (8) 보험료 (8) 보험료 (9) 보험료 (10) 의료비 (10) 의료비 (10) 의료비 (10) 교육비 (10) 교육비 (10) 교육비 (10) 교육비 (10) 구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1) 교육비 (12) 전략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3) 전략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4) 전략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5) 전략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응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응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응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응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안 합 계: 응+응+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u> </u>	<u> </u>		이 근로소!	투자 세애간면			2,221,020				
(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월)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1) 합 계: (월)+(월)+(월)+(월) (월)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월) 근로소득시액공제 (1) 보험료 (1) 보험료 (1) 보험료 (1) 전에인전용보장성 (1) 전에 의료비 (1) 교육비 (1) 교육비 (1) 교육비 (1) 교육비 (1) 지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⑨「소득세	법 상 세액감면((제59조의5)	<u> </u>				0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⑥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⑦ 합 계: ⑧+⑩+昣+昣 ⑥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修 근로소득세액공제 용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전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기의 교육비 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0				
(1) 합 계: (3)+(4)+(5)+(6) (1)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본함료 (3) 보험료 (4) 보험료 (4) 보험료 (5) 세액공제액 (6) 의료비 (6) 의료비 (6) 의료비 (7) 교육비 (7) 교육비 (1) 대공제액 (2) 지대상금액 (4) 세액공제액 (3) 지대상금액 (4) 시액공제액 (4) 시액공제액 (5) 시액공제액 (6) 시액공제액 (7) 시액공제액								0				
● 근로소득시액공제명세 환경제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5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사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시액공제액 등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시액공제액 101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2 세액공제액 1 4세액공제액 1	<u></u> 옛 조세조의	약(원어민교사 등)						0				
● 근로소득세액공제	99 합 계:	93+94+95+96						0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5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시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서액공제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2 세액공제액 1 100 오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⑩ 근로소득기	다 세액공제명세							
무별세액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1,2 세액공제액 1 1,2 세액공제액 1	99 근로소·	득세액공제						104,957				
특별세액 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2 지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2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1				보	L장성		-	586,880				
특별세액 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세액공제액 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2 세액공제액 1 세액공제액 1		ᅠ	_			1	·	70,425				
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1,2 세액공제액 1 1 시액공제액 1				장애인전	전용보장성		·	0				
에 의료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1,2 대장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대장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대장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대장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 대장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득멸세액 공제					0						
공제대상금액 1,2 세액공제액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2 1 3 1 4 1 4 1 5 1 6 1 7 1 8 1 9 1 1 1 1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 1 1 1 1 1 1 1 1 1 2 1 3 1 4 1		1000 의료비										
		@ 78W					-	1,284,000				
		(101) 교육비				세액공제역	백	192,600				
(M3) 이구나브세애고제			액공제					0				
	⑩ 외국납	납부세액공제						0				
⑩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①④ 월세액	ị 세액공제						0				
			데이 하네			세액공제역	<u>"</u>	0				
(19) 합 게 영~(19) 제엑동세찍 합게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기보버. 제45天이?	에 따라 이이 내요	으 시고하며 의	 <u> 요오 초</u> 브쉬	367,982 거트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른 기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12일

신고인 이현섭

(서명 또는 인)

성북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